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제정 2011. 8. 5 조례 제2335호 일부개정 2016. 2. 18 조례 제2712호 일부개정 2019. 7. 1 조례 제3078호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양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2. 18>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주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6. 2. 18, 2019. 7. 1>
 - 1.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 - 2. 시에 소재한 기관 ·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
 - 3.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- 제3조(법령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재정법」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 2. 18>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18>
- 제5조(주민의 권리)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18, 2019. 7. 1>

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

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 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

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립하고 이를 시보, 시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18, 2019. 7. 1>

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-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)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,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1>
 - ③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7. 1>

[제목개정 2019. 7. 1]

제8조(결과 공개)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- 제9조(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 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6. 2. 18>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. <신설 2019. 7. 1>
 -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7. 1>
 - 1.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
 - 2. 동장이 추천한 사람
 - 3.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

법」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

- 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동별, 성별,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>
- ⑥ 시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15일 이상 시보, 시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7. 1> [제목개정 2016. 2. 18]
- 제10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6. 2. 18>
 - 1.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
 - 2. 해당 연도 예산편성계획 청취
 - 3.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
 - 4.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
 - 5. 총회·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
 - 6.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 · 개정
 - 7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
 - ② 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한 후에는 이를 회계연도 시작 70일 전까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18>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- 제11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,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9. 7. 1]
- 제12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18, 2019. 7. 1>
 - 1. 주민이 제2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
 - 2.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스스로 사퇴를 요구한 경우
 - 4. 위원회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- 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
[제목개정 2019. 7. 1]

[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, 7, 1]
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 심사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안 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7. 1]

- 제14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했하다.
 -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9. 7. 1>

[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- 제15조(운영 원칙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 <개 정 2016. 2. 18>
 - 1.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
 - 2.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
 - 3. 정치적 · 사적인 목적의 활동 배제
 - 4.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하고 안양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 활동 배제
 - 5.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 제고
 - 6.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
 - 7.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

「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. 7. 1〕

제16조(활동 시기) 위원회는 시장이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날부터 시작하여,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제11조제2항의 주민참여예산안을 통보하는 때까지 활동한다.

[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제1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

위원회를 둔다.

-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 별로 8개 이내로 하고,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-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을 둔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 선임부서 주무담당 주사로 한다.
-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 위원장·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 무를 대했하다.
-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,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
- ⑨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1.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작성한 예산검토의견에 대한 분석
- 2. 소관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
- 3. 분과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

「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. 7. 1〕

제18조(분과위원회의 기능)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지역회의 운영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집약
- 2.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지역 회의 예 산건의안 심의
- 3.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예산검토 및 예산요구서 심의
- 4. 제3호 중 관련부서 예산요구서의 수정 또는 사업의 추가 심의
- 5.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확정
- 6. 그 밖에 분과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
-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한 후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「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. 7. 1〕

제1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

개최하되. 사전에 시장과 혐의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 2. 18>

[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제20조(회의결과 공개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비 공개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 수,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- 제21조(교육·홍보 및 주민참여)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·교육·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18>

[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- 제22조(자료 제출 및 협조) ①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6. 2. 18>
 -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1>

「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. 7. 1〕

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

제23조(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(이하 "지역회의"라한다)를 두고, 지역회의에서 "주민"이란 제2조의 각 호의 "시"를 "동"으로 바꾼 의미를 정의한다.

-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
- 이 위촉한다. <개정 2019. 7. 1>
- ③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18>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2. 18>
-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 직무를 총괄하고, 지역회의를 대표한다. <개정 2016. 2. 18>
-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 2. 18>
-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해당 동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6. 2. 18, 2019. 7. 1>

[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- 제24조(기능)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
 - 2.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의 확정 및 분과위원회 제출
 - 3.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
 -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발굴, 연구, 토의할 수 있다.
 - 1. 지역 주민 숙원사업
 - 2. 마을 경관, 마을 미관 등 지역공간 개선사업
 - 3. 마을 홈페이지 구축 · 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사업
 - 4. 마을의 자연·역사·문화 등 지역자원의 보존·개발사업
 - 5.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[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. 7. 1]
- 제25조(회의) ① 지역회의는 활동 시기에 제한 없이 연중 운영한다. <개정 2019. 7. 1>
 -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 2. 18>
 - 「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. 7. 1〕

제5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

- 제26조(설치 및 구성 등) ① 시장은 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협의회는 부시장, 실·국·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20명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9. 7. 1>
 -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 - ④ 의장, 부의장,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⑤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.
 - 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된다. <개정 2016. 2. 18>
 - ⑧ 의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16. 2. 18]

[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- 제27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9. 7. 1>
 - 1.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·조정(우선순위의 결정 등)
 - 2.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
 - 3.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

[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제28조(회의)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며,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 2. 18>

[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제6장 보칙

제29조(지원)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

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1>

- ②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, 설명회, 공청회, 연구회,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1>
- ③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회의 참석자와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2. 18>

[제목개정 2019. 7. 1]

[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제30조(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)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7. 1>

[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- 제31조(관련부서 등의 조치) ① 관련부서는 지역회의 예산요구안을 검토한 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, 이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>
 - 1. 예산검토의견 작성: 해당 지역사업추진이 부적절하거나 효율성·형평성· 가용재원 등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
 - 2. 예산요구서 작성: 해당 지역에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 -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협의회가 확정한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18>

[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9. 7. 1]

- 제32조(포상)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분석·평가,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7. 1]

제3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「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. 7. 1〕

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2. 18 조례 제271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하되,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칙 <2019. 7. 1 조례 제307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21년 1월 31까지 연장하고, 2019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.